

제 호

( 앞쪽 )

### 물적자원훈련통지서(물자 제출용)

업체명							
주소							
물자의 소유자(점유자) 또는 업체 대표자 성명				생년월일			
물자의 품명	규격 또는 구조	단위	수량	물자의 제출 또는 인도			훈련기간
				일시	장소	인수자	

「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물적자원훈련을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중앙행정기관의 장 · 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특별자치시장 ·  
도지사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지방행정기관의 장

직인

< 절 취 선 >

제 호

### 물적훈련통지서(물자제출용) 수령증

수령자	성명	(서명 또는 인)		생년월일	
	주소			소유자(점유자) 또는 업체의 장과의 관계	
	수령일시			수령장소	

## 물적자원훈련통지서(물자 제출용)

### (안내사항)

1. 이 통지서를 받은 물자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업체의 장은 통지서에 적힌 물자를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제출하거나 인도해야 합니다.
2. 장비를 제출할 때에는 그에 딸린 예비품 및 공구를 반드시 장비와 같이 인계해야 합니다.
3. 동시관리훈련인 경우 이 통지서와 함께 인력훈련통지서를 받은 물자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업체의 장은 인력훈련통지서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해야 하며, 장비 및 업체와 동시관리훈련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.
4. 이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물자를 제출 또는 인도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「비상대비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1,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.

- 
1. 이 수령증은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.
  2. 통지서 교부권자는 이 통지서를 교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